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24호 2009. 2. 23.

공 고

제2009-148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주민수 현황		2
제2009-15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148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주민수 현황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중 랑 구 청 장

작성기준 : 2008. 12. 31현재 관내현황

단 위 : 명

총인구수	주민투표권자 총 수 (F=C+D+E)	19세 이상 투표권자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수 (D)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수 (E)	비 고
		계 (C=A-B)	19세이상 주 민 수 (A)	투표권 없는자 (B)			
427,871	341,377	340,910	342,352	1,442	72	395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15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 2. 12. 「주민투표법」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 등의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의 책무(안 제2조제4항)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

다.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열람

(안 제8조 내지 제10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 131-701, 전화 : 02)490-3313~4, FAX : 02)490-3769, E-mail : ksoh@chungna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자치행정과(☎ 490-3313)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